

뉴저지 남성목사합창단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'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'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소속 남성 목사로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및 교단간의 연합을 도모하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장소) 본회는 뉴저지에 둔다.

제 4 조 (소속 및 협력)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안에 속하며, 상호간 협력 체제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자격)

- (1)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객원회원으로 한다.
- (2) 정회원 : 정회원은 뉴저지한인목사회 소속 남성 목사로 소정의 입단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
- (3) 준회원 : 입단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준회원으로 한다.
- (4) 객원회원 :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하에 객원 회원을 둘 수도 있다.

제 6 조 (의무 및 권리)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- (1) 회원으로서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
- (2) 입회비 및 소정의 월 회비 납부의 의무
- (3)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의 준수 의무
- (4)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의 참가권리 및 의무
- (5)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(6) 회칙의 개정 및 제반 규정에 관한 발언권 및 표결권

제 7 조 (징계) 본회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할 수 있다.
(단 임시총회를 거쳐 집행토록 한다.)

제 3 장 조 직

제 8 조 (임원)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(1) 단장 1인 (2) 부단장 1인 (3) 총무 1인 (4) 서기 1인 (5) 회계 1인
- (6) 지휘자 1인 (7) 각 파트장 1인 (8) 감사 2인

제 9 조 (임원의 선임)

- (1) 단장, 부단장,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(단, 단장과 부단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)
- (2) 총무는 회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, 기타 임원은 총무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.
- (3) 지휘자 선임은 임원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.
- (4) 각 파트장은 회원들의 추천 및 단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보선)

- (1)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번째 임원회의 때 까지 해야 한다.
- (2)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, 단장 결원 시 부단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, 여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단장이 결정한다.

제 11 조 (임기)

- (1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.
- (2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- (1)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시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.
- (2)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 부재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3) 부단장은 각종 협력을 위한 연락 및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대원 확보 직무를 수행한다.
- (4)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여 회의, 사무, 회계, 연락 등의 책임을 지고,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 수행한다.
- (5) 서기는 모든 회의와 사업의 문서를 기록 보존하며 총무를 보좌 하는 것과 총무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6) 회계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.
- (6) 각 파트장은 임무 특성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며, 부단장을 보좌하여 홍보 및 대원 확보 직무를 수행한다.
- (7)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시 회원에게 보고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3 조 (종류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로 구분된다.

제 14 조 (구성)

- (1)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.
- (2)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이 의장이 된다.
- (3) 본회는 임원회를 두며, 총회의 의결 사항 외의 일반 안건들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실행한다.
- (4) 직전 단장을 임원회 구성원으로 한다.
- (5) 중경 단장을 자문위원으로 한다.

제 15 조 (소집)

- (1) 정기총회는 연 9월 중에 소집하며, 2주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.
- (2) 임시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 1/4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소집하며, 7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그 일시, 장소, 의안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성립과 의결)

- (1)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단, 의결 결과가 동수인 때는 재의결하며, 다시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)
- (2) 총회에서는 미리 공지된 의안에 한해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(단,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긴급의안을 채택하여 심의할 수 있다.)

제 17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(1) 임원 및 감사 선출 (2) 결산 승인 (3) 회비책정 (4) 기타 의결사항

제 5 장 연주회 및 합창연습

제 18 조 (연주회)

- (1) 정기 연주회는 필요시 년 1회로 한다.
- (2) 특별출연 및 초청연주회 참석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주회 관련 사항을 합창단 전 회원에 통보, 일정 기간 연습을 실시하며 연습 기간에 전 회원은 동참한다.

제 19 조 (정기연습)

- (1) 정기 합창연습은 매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습을 할 수도 있다.

제 6 장 사 업

제 20 조 (일반사업)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(1) 찬양을 통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회, 교단간의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교계적 사업
- (2)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원회의 의결된 사업

제 7 장 재정 및 회계

제 21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사회 회비, 찬조금 및 특별 수익으로 충당한다.

제 22 조 (회비) 회비는 연 \$100 로 한다.

제 23 조 (회계 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제 24 조 (회계 감사)

- (1) 감사는 본회의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하며,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(2) 임원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25 조 (경조금) 본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경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.
(단, 적정한 회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시)

- (1) 경조금 지출 대상은 회원의 직계 경조사
- (2) 경조금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8 장 후원회

제 26 조 (후원회)

- (1) 본회는 합창단의 발전과 활동의 유익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- (2) 조직은 후원회 이사장 1명과 다수의 후원 이사로 한다.
- (3) 후원회에 관련된 결정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.

제 9 장 회칙개정

제 27 조 (회칙개정) 회칙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- (1)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본 회에 상정한다.
- (2) 출석회원 2/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한다.

제 10 장 부 칙

제 28 조 (회칙시행) 본 회칙은 2013년 11월 18일 창단총회로부터 시행한다.

■ 회칙수정 날짜 ■

2015년 10월 19일 (제 3회 정기총회)
2016년 10월 5일 (제 4회 정기총회)
2017년 11월 21일 (제 5회 정기총회)
2018년 11월 6일 (제 6회 정기총회)
2021년 9 월 24일 (제 9회 정기총회)